

- 여성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

『여성 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연구기반에서의 연구과제 발굴과 지역 여성 연구자 인재육성, 여성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여성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 사업명 : 여성 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 연구범위 : [부록]산업기술분류표 기준 소분야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기간 : 1년
- 지원규모 : 4.5억원/년 (9과제 내외)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연구자(개인 또는 팀)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과제수행비

지원내용	지원금	기간	지원과제수	비고
연구과제 수행비	50백만원/년 이내	1년	9과제 내외	간접비(지원비 10%, 연구지원기관 귀속)포함

<세부 지원내역>

구분		지원항목
직접비 (연구과제 수행비)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의 설치·구입·임차·사용경비
	시제품 제작비	시약 및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교육·세미나 참가비, 기술정보 수집비, 전문가 활용(자문)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회의비 등
	연구수당	(1인)직접비 10%이내 (2인)직접비 15%이내 (3인)직접비 20%이내
간접비		총 지원금의 10% ※ 연구지원기관 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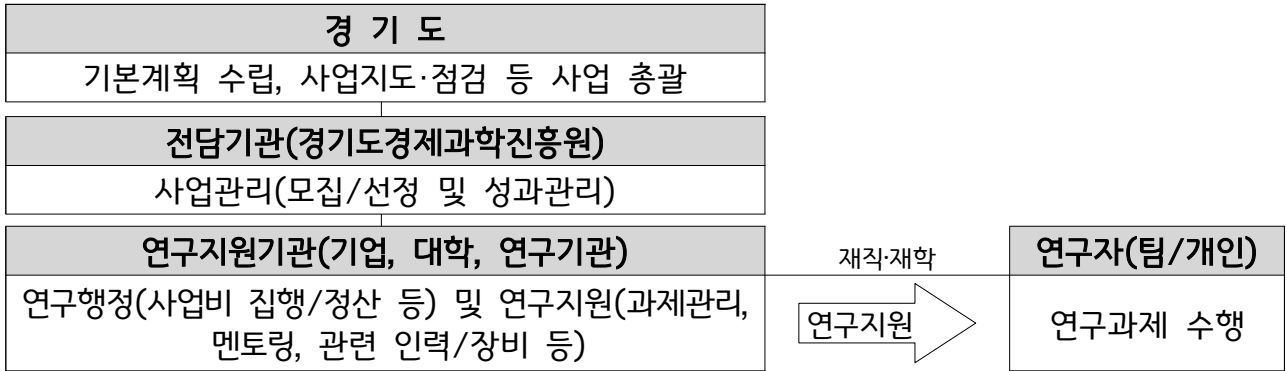
□ 신청자격 :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및 신청

구분	참여조건	필수요건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의 동일한 *연구지원기관에 소속 중인 연구자(들)가 3인 이하의 팀(또는 개인)을 결성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들) ① 참여 연구자(들)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능력 보유 ② 연구자 중 1인 이상은 경기도 주소지 ③ 과제 연구책임자는 여성(女性) ※ 단독(1인)일 경우 반드시 여성 및 경기도 주소지여야 함 	연구지원기관과 사전협의	
연구지원 기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구비 	교육/멘토링, 연구시설, 연구행정 등 과제수행 지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구분	내용	비고	예상일정
공모	이지비즈(egbiz.or.kr)를 통해 공모	경과원	23.4.~5.
신청접수	서면(원본) 및 이메일 제출	연구지원기관→경과원	23.5.
적격심사	신청서 및 부속서류 검토 등	경과원	23.5.
선정심사	(1차심사) 서면심사위원회	심사위원 7인	23.5.
	(2차심사) 대면심사위원회 ※ 연구책임자가 직접발표(필수)	심사위원 7인	23.5.~6.
결과통보	심사결과 통보/연구개발계획서 수정	경과원→연구지원기관	23.6.
협약체결	지원협약 체결(이행보증보험)	경과원/연구지원기관	23.6.
중간점검	과제진도, 지원금 집행관리 등	경과원→연구지원기관	2·4분기(2회)
최종평가	연구과제 최종평가(최종평가위원회)	심사위원 7인	24.6.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연구과제의 지원조건이 미충족 등 협약체결 불가사유 발생 시 후순위 연구과제 (60점 이상) 선정, 적격자 없을 시 재공고

※ 신청접수의 적정건수 미달될 경우, 서면절차 생략 가능(대면심사 100%로 과제 선정)

※ 대면심사는 별도 사업비 적정심의(검토)를 진행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지원협약 체결

4

신청방법

□ 제출서류(필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소정양식) ※ 서식 임의변경 불가	① 연구개발 계획서 원본 1부(소정양식) ②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④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연구자 (참여연구자 전부)	①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② 재직(재학)증명서 각 1부 ※ 해당 연구지원기관 재직(재학) 증명 ③ 최종 학위증명서 각 1부 ※ 학사 이상의 학위 전부(해당시)
연구지원 기관	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②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포함 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 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한함 ④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및 정보내역(서식참조) ⑤ 기타 회사소개서 등(해당 시) 1부.
	대학 사업자등록증 1부
	연구기관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설립 허가증 1부 ※ 연구지원기관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설립근거 및 법령, 허가기관 확인용 ③ 기관 소개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제출(권고) 후 이메일(lch@gsa.or.kr) 발송

※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

※ 제출(접수)기간 : 2023년 5월 10일(수) 09:00 ~ 5월 12일(금) 16: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서류누락이나 정정(수정)에 필요한 시간할애 절대불가

※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발송 필수(한글파일/스캔본 둘다 제출)

※ 온·오프라인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임의 판단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미제출 하거나 접수기간 이후 제출 시 실격처리

※ 제출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만 가능 ※점심시간 : 12:00~13:00

- 아래 사안에 따라 선정 이후라도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또는 일부)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추가 제재사항이 수반될 수 있음

구분	지원제외 사항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내 타과제 참여율 합이 100%를 초과한 경우(중도 지원취소 가능) ○ 본 사업에 1명의 연구자가 2과제 이상 중복 참여하여 신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참여 불가, 중복참여 시 신청과제 모두 지원제외(예정)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기피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 연구개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연구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연구지원기관이 2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1개 과제에 한함, 복수 신청 시 신청과제 모두 지원제외 ○ 공고일 현재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공고일 이후 지원기간 내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닌(유지곤란) 경우 ○ 연구지원기관과 무관한 제3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별도 사업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지원금에 대한 100% 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정이 되어도 보험증권 미제출시에서는 결격사유로 지원제외 됨</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거짓(허위) 또는 누락한 경우 ○ 연구자가 연구지원기관 소속이 성립(유지)되지 않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지원(협약)기간 내 소속관계(재직, 재학 등) 유지(연구지원기관 소속 보증)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지원기간이라도 소급 적용하여 협약해약(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개인 또는 연구지원기관이 정부 및 지자체 등 타기관(전담기관 포함)에서 지원 제재대상인 중인 경우 ○ 정해진 기일 내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책임자가 심사에 불참(불응)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선정심사, 현장점검, 최종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 법원, 은행 등 채권집행기관(개인)으로부터 압류(차압)가 진행되는 경우 ○ 기타 경기도지사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연구자당 1과제 참여가 원칙입니다.(중복 또는 다중신청 불가)
-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의 연구지원기관 소속은 “정규직, (유기/무기)계약직, 파견직, 인턴직, 파트타임, 재학생” 등을 의미하며, 연구지원기관에서는 과제신청 시점부터 과제수행 종료 및 사업종료 시까지 참여 연구자의 신분(소속)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고시 제2023-6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지원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노동·환경·납세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연구지원기관(기업에 한함)은 대면심사의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한 최종점수의 20%를 감점합니다.
- 사업비 기준항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연구수당 : 연구자 인원기준(1인 : 직접비의 10%이내, 2인 : 직접비의 15%이내, 3인 : 직접비의 20% 이내 계상)
 - * 간접비 : 지원금의 총액의 10% 이내로 계상
- 사업비는 연구지원기관 명의의 사업비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로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연구지원기관이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사업비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세무당국이 사후환급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총사업비를 제외한 연구에 소요되는 간접적 연구지원(장비/설비, 연구 인프라 활용 및 제반비용)은 연구지원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과제 수행 시 연구자의 과제 참여율(타과제 포함 100% 한도) 관리를 준수(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격 요건에 이상이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심사일정을 개별통보 합니다.
(통보방법 : 유선전화(또는 문자) 및 이메일) ★ 이메일 관리 주의
- 신청 시 제출한 제출서류 외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 시 선정되더라도 선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서의 수정보완 요청(사업비 조정 등)에 불응할 경우 지원협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경기도 또는 전담기관 사정에 따라 취소·연기·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후속사업 진행여부는 道 지원정책에 따름)
-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반이나 연구윤리에 어긋날 경우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자나 연구지원기관의 부정행위 발견 시 지원과제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취소되며, 추가 제재조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계획서의 기재정보(전화번호, 연락처 등)의 오류(또는 수신불능)나 연구책임자의 대면심사 불참 시 선정취소 등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가 신청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은 본 공고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고내용의 미준수(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책임)은 연구지원기관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 이철희 책임연구원
(Tel. 031-776-4823 / E-mail : lch@gbsa.or.kr)

※ 접수기간에는 유선문의가 폭주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선정심사 운영방안

- 선정심사 : 2단계 심사(서면심사 → 대면심사)

구분		서면심사	대면심사
진행방식		서면심사위원회	발표심사(과제당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심사자		외부 전문가(심사위원) 총 7인	
심사대상		사업신청(적격) 연구과제	서면심사를 통과한 연구과제
심사일정 (변경가능)		2023. 5. (예정)	2023. 5. 또는 6.(예정)
심사 기준	심사 지표 (배점)	· 기술의 차별성(30) · 연구과제의 적합성(30) · 목표달성 가능성(40)	· 연구과제의 적정성(25) · 연구과제의 기술성(30) · 연구자 수행역량(20) · 목표달성 가능성(20) · 지역 공헌도(5)
	제한 기준	-	경기도 고시 제2023-6호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의 지원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노동·환경·납세분야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업은 평가총점의 20% 감점
선정기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고득점순(최고·최저 점수 제외)	
선정규모		27과제(3배수) 내외	9과제 내외

※ 최종 선정된 연구과제의 지원조건이 미충족 등 협약체결 불가사유 발생 시 후순위 과제(60점 이상)의 연구과제로 협약체결 진행, 적격자 없을 시 재공고

※ 대면심사는 별도 사업비 적정심의(검토)를 진행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협약체결